

「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영태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, 시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, 지정 및 지정신청(안 제4조~제6조)
- 골목형상점가 사업지원, 지정 취소(안 제7조~제8조)
-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기능 및 임기, 운영 등(안 제9조~제1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의2,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5. 3. ~ 5. 8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‘골목형 상점가’의 지정 및 각종 사업지원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

○ 검토 결과,

-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, 조례 제정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써,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